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왕식 의원 외 10인)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왕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12.
발 의 자 : 이왕식 · 장두욱 · 홍진규 · 김희원 · 윤성규 · 윤창욱 · 이시하 · 이영식 · 이용진 · 장영석 · 한재석 의원(11인)
찬 성 자 : 19인

1. 제정 이유

○ 경상북도 농공단지는 도내 20개 시 · 군에 소재한 지역경제의 뿌리이나 관리공단 등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 운영 등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등 사무국 기능 및 역할(안 제4조)

○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 인력 · 자금 ·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 해소 지원

○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 농공단지 발전포럼 운영, 컨설팅·교육, 산학연 협력사업 등 추진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다. 예산지원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검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붙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2조 및 시행령 제41조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5. 관련부서협의

○ 법제심사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 해당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공단지 발전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사무국 설치·운영 및 지원) ①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농공단지 지원협의회(이하 “농공단지 지원협의회”라 한다)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 기능 및 역할)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 자금 ·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 · 강연회 등 행사개최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①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협의회 사무국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생략)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 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 ⑥(생략)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생략)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생략)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생략)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 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사무국 운영 인건비, 농공단지지원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포럼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 비용추계의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신규 재정부담 발생

(단위 : 만원)

구분 \ 연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입	○ 인건비						
	○ 사업비						
	소계(a)						
세출	○ 인건비	2,000	6,000	6,000	6,000	6,000	26,000
	○ 사업비	2,000	6,000	6,000	6,000	6,000	26,000
	소계(b)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 총 비용(a-b)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만원)

구분 \ 연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비 사용목적

○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무국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등 인건비 지급

○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무국 기능 및 역할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비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규정 적용

❑ 2013년 비용추계비 : 40백만원(도비 40백만원)

○ 재원 비율 : 도비 100%

❑ 항목별 비용추계 방법

○ 사무국장 등 인건비 : 20백만원

- 사무국장 1명×350만원×4개월 = 1,400만원
- 사무간사 1명×150만원×4개월 = 600만원

○ 시책설명회·간담회 등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행사개최 : 20백만원

- 시책설명회·간담회 1회×500만원×4회 = 2,000만원

※ 작성자 : 도시계획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철(☏ 950-3474)

발의 서명명부

(제명: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李旺植		
尹聖圭		
金照元		
장두욱		
한재성		
홍진규		
이시하		
윤창욱		
이영성		
이용진		
강영석		

찬성 서명명부

(제명: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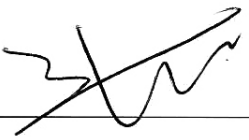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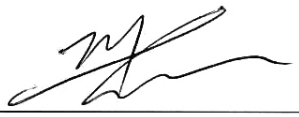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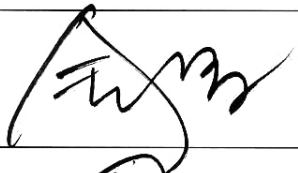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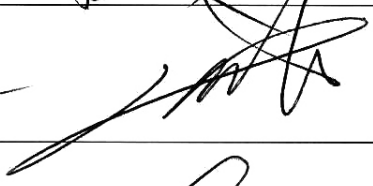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황 이 자		
정 영 길		
배 수 향		
김 창 욱		
이 경 임		
이 정 호		
이 태 식		
김 수 용		
김 영 기		
김 종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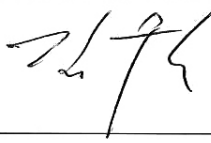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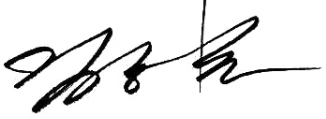

찬성 서명명부

(제명: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박 기 진		
박 병 훈		
박 진 현		
이 상 용		
김대일		
장 세 헌		
정한석		
채 옥 주		
김 기 홍		